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1. 개 요

1. 세 입

(1) 세입규모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06%인 5억 3,438만 9천원이 증가된 508억 92만 8천원임.

(단위 : 천원, %)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50,800,928	50,266,539	534,389	1.06

(2) 세입내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에서 33억 7,157만 9천원 증액
- 보조금에서 33억 3,719만원 감액
- 지방채에서 5억원 신규 계상되었음

2. 세 출

(1) 세출규모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 세출예산 대비 3.95%인 14억 5,063만 9천원이 감액된 352억 5,813만 2천원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35,258,132	36,708,771	△1,450,639	△3.95

(2) 세출내역

가. 소관 부서별 내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안	제2회 추경액	제2회 추경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기획감사실	13,984,067	13,922,531	61,536	0.44
정보홍보담당관	979,520	784,843	194,677	24.80
총무과	6,131,314	5,527,590	603,724	10.92
주민자치과	1,639,645	5,000,631	△3,360,986	△67.21
지방세과	335,716	332,965	2,751	0.83
경영회계과	1,419,518	669,518	750,000	112.02
민원봉사과	449,431	284,131	165,300	58.18
보건소	3,308,104	3,351,563	△43,459	△1.30
문예시설관리사업소	1,048,407	875,889	172,518	19.70
동예산	5,962,410	5,959,110	3,300	0.06
합 계	35,258,132	36,708,771	△1,450,639	△3.95

나. 명시이월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배정액	지출원인행위	이월액	이월사유
총 사 업 건 수(15건)	2,883,339	5,000	13,510	2,869,829	
자체사업(8건)	1,268,287		8,760	1,259,527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웹버전 설치	87,027			87,027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서창동마을회관 건립	80,000			80,000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광천동사무소 증축	148,960		8,760	140,200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풍암동사무소 신축	400,000			400,000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금호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250,000			250,000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세하동 마을회관 건립(특별교부금)	112,000			112,000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상무시민공원 주변 게이트볼장 설치(특별교부금)	25,000			25,000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	165,300			165,300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보조사업(7건)	1,615,052	5,000	4,750	1,610,302	
마북동 마을회관 건립	100,000			100,000	사업계획변경
화담사 서재 복원	180,000	5,000	4,750	175,250	문화재청 설계심사 지연
문화의 집 조성	400,000			400,000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서창향토문화 마을조성	700,000			700,000	대상사업 미발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2,518			22,518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생활체육공원 조성	100,000			100,000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지연
국민체육센터 건립	112,534			112,534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지연

II. 검토의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추가로 증액 내시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 상반기 극심한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과 기금적립금, 각종 부담금 등 필수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0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06%인 5억 3,438만 9천원이 증가된 508억 9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200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95%인 14억 5,063만 9천원이 감액된 352억 5,81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분	증(△)감액
세 입	50,800,928	50,266,539	534,389	1.06
세 출	35,258,132	36,708,771	△1,450,639	△3.95

이상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분석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편성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금부담금의 추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에 3억 3,79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이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과목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분기별로 지급해야 하는 경상적 경비 중 법적 필수적 경비로서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전액은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의 추경이 있었고,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의한 추가변경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그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은 추경편성사유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법적 필수적 경비는 소요예산 전액이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내 집행 불가능한 경비의 세출예산안 편성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 중 명시이월된 것은 6건으로서, 1건은 국·시비보조사업이며 5건은 자체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나 자체 신규사업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을 소요재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세하동 마을회관 건립)는 보조금교부결정이 지연되었거나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된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배정액	지출원인행위	이월액	이월사유
총 사 업 건 수(6건)	1,036,845			1,036,845	
자체사업(5건)	1,014,327			1,014,327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웹 버전 설치	87,027			87,027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풍암동사무소 신축	400,000			400,000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금호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250,000			250,000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세하동 마을회관 건립(특별교부금)	112,000			112,000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	165,300			165,300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보조사업(1건)	22,518			22,518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2,518			22,518	소요사업비결산추경확보

다만 자체 신규사업 중 다른 네 가지 사업, 즉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웹 버전 설치, 풍암동 사무소 신축, 금호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토지관련 정보체계 구축사업비 등을 이번 결산 추경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의 보정제도의 하나로서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들 네 가지 사업은 예산확정 시에서 본다면 그 성격상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예산 편성 시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추경편성사유나 명시이월 사유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경비 중 주로 그 경비사용 대상인 사무 또는 사업에 관계되는 특수사유에서 또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이월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지만 그 후의 정세변화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들 네 가지 사업비와 같이 예산 편성 시에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사례는 앞으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